

憲法懇談會 등에서提示된 意見要約

(憲特·地域懇談會·德裕山大會)

1986. 7. 29.

民主正義黨
憲法特別委員會

目 次

1. 概 觀	2
2. 基本權分野	3
3. 司法制度分野	11
4. 政府形態分野	13
○ 議院內閣制	13
○ 大統領中心制	17
○ 折衷型 政府形態	19
5. 財政・經濟分野	25

1. 概 觀

가. 基本權分野

- 國家權力을 合理的으로 制約, 國民의 基本權을 最大限 伸張 시키는 것이 憲法의 目的임을 主張
- 個個條文의 補完·追加외에 關聯 下位法令 改正 主張
- 國民의 基本權保障을 위한 司法府 獨立 要求

나. 政府形態分野

- 政府形態別 長·短點을 자세히 指摘하고 短點의 補完策 建議
- 議院內閣制가 오히려 民主方式임을 強調
- 어떤 形態이든지 權力分散의 重要性 認識
- 折衷型 政府形態 發表 忌避
- 政府形態와 地方自治制의 連繫性 主張

다. 財政·經濟分野

- 現行規定 維持 主張, 一時的 時代性 反映條項의 削除 要求
- 經濟力集中 緩和 要求
- 地方自治制 實施와 관련하여 地方財政 確保條項의 新設
- 中小企業 育成條項의 補完

2. 基本權分野

現 行	意 見	備 考
<p>第 9 條 모든 國民은 人間으로 서의 尊嚴과 價値를 가지며, 幸福을 追求할 權利를 가진다. 國家는 個人이 가지는 不可 侵의 基本的人權을 確認하 고 이를 保障할 義務를 진다.</p>	<p>○生命權 保障規定 新設 “生命·自由 및 幸福追求에 대한 國民의 權利는 公共의 福利에 反하지 않는 한 最大限度로 尊 重”</p>	
<p>第 10 條 ①모든 國民은 法앞에 平等하다. 누구든지 性別·宗 教 또는 社會的 身分에 의하 여 政治的·經濟的·社會的· 文化的 生活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差別을 받지 아니한 다.</p>	<p>○男女平等에 관한 獨立規定 ○“政治的 信條”에 의한 差別 待遇禁止條項 新設</p>	
<p>第 11 條 ①모든 國民은 身體 의 自由를 가진다. 누구든지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逮捕·拘禁·押收·搜索·審 問·處罰과 保安處分을 받지 아니하며, 刑의 宣告에 의하 지 아니하고는 強制勞役을 당</p>	<p>○保安處分의 一律的 法律留保 再 考 —法院의 判決로만 保安處分토 록 함. ○任意同行에 憲法的 規制裝置 補完 —治安判事制 導入 —保障의 明文化</p>	

現 行	意 見	備 考
<p>하지 아니한다.</p> <p>②모든 국민은拷問을 받지 아니하며, 刑事上 자기에게 不利한 陳述을 強要당하지 아니한다.</p> <p>③逮捕·拘禁·押收·搜索에는 檢事の 申請에 의하여 法官이 發付한 令狀을 提示하여야 한다. 다만, 現行犯人인 경우와 長期 3年以上의 刑에 해당하는 罪를 犯하고 逃避 또는 證據 湮滅의 念慮가 있을 때에는 事後에 令狀을 請求할 수 있다.</p> <p>⑥被告人의 自白이 拷問·暴行·脅迫·拘束의 不當한 長期化 또는 欺罔 기타의 方法에 의하여 自意로 陳述된 것이 아니라 고 인정될 때 또는 正式裁判에 있어서 被告人의 自白이 그에게 不利한 유일한 證據일 때에는 이를 有罪의 證據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處罰할 수 없다.</p>	<p>- 本人의 同意書 添附</p> <p>○身體의 自由에 대한 不當한 侵害時(暴行, 拷問等) 法院에 即時 救濟請求할 權利 新設</p> <p>○緊急拘束 24 時間 以內로 制限</p> <p>○令狀의 事前審査制度導入으로 令狀發付時 信憑性 있는 證據 要求</p> <p>○要求가 있을 때 防禦의 機會를 주는 審問을 거쳐 發付</p> <p>○搜查機關의 拷問防止 規定 插入</p> <p>○直接 證據主義, 直接審理主義 明文化</p>	

現 行	意 見	備 考
<p>第 13 條 모든 國民은 居住·移轉의 自由를 가진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國家權力에 의한 國籍剝脫 禁止 ○ 自國民 不引導 原則 規定 	
<p>第 16 條 모든 國民은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를 侵害받지 아니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個人과 家族等에 關한 情報의 濫用으로부터 保護받을 權利」 明文化 	
<p>第 17 條 모든 國民은 通信의 秘密을 侵害받지 아니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通信의 自由 侵害時 法官의 令 狀提示 	
<p>第 20 條 ①모든 國民은 言論·出版의 自由와 集會·結社의 自由를 가진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言論·出版·放送·放映에 대한 許可와 檢閱禁止 ○ 言論·出版·放送·放映會社 設立에 關한 許可制·免許制 排除 ○ 國民의 알 權利 規定 ○ 取材源, 情報源의 保護와 情報 公開請求權 新設 ○ 集會·結社에 대한 許可制度 自體를 禁止 ○ 言論機關의 編成·報道의 獨立을 위해 經營主等 內外의 간섭배제 條項 新設 	
<p>第 21 條 ①모든 國民은 學問과 藝術의 自由를 가진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大學에서의 教授의 自由 規定 新設 	

現 行	意 見	備 考
<p>第 22 條</p> <p>③公共必要에 의한 財産權의 收用·使用 또는 制限은 法律로써 하되, 補償을 支給하여야 한다. 補償은 公益 및 關係者의 利益을 正當하게 衡量하여 法律로 正한다.</p> <p>第 23 條 모든 國民은 20 歲가 되면 法律이 正하는 바에 의하여 選舉權을 가진다.</p> <p>第 25 條 ①모든 國民은 法律이 正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機關에 文書로 請願할 權利를 가진다.</p> <p>第 26 條</p> <p>②軍人 또는 軍務員이 아닌 國民은 大韓民國의 領域안에서는 重大한 軍事上 機密·哨兵·哨所·有害飲食物 供給·捕虜·軍用物·軍事施設에 관한 罪중 法律에 正한 경우와, 非常戒嚴이 宣布되거나 大統領이 法院의 權</p>	<p>○完全한 事前補償 檢討</p> <p>○다툼은 民事訴訟으로 하도록 明文化</p> <p>○選舉權 年齡 18 歲로 引下</p> <p>○「文書로 평온하게」를 挿入</p> <p>○戒嚴이나 非常措置下에서도 一般法院이 正常的으로 運營될 수 있을 때에는 民間人은 軍事 裁判을 받지 않도록 함.</p> <p>○大統領의 非常措置 削除</p>	

現 行	意 見	備 考
<p>限에 관하여 非常措置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軍法會議의 裁判을 받지 아니한다.</p> <p>第 27 條 刑事被告人으로서 拘禁되었던 者가 無罪判決을 받은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에 正當한 補償을 請求할 수 있다.</p> <p>第 28 條</p> <p>②軍人·軍務員·警察公務員 기타 法律로 정하는 者가 戰鬥·訓練등 職務執行과 관련하여 받은 損害에 대하여는 法律이 정하는 報償 外에 國家 또는 公共團體에 公務員의 職務上 不法行爲로 인한 賠償은 請求할 수 없다.</p> <p>第 29 條 ①모든 國民은 能力에 따라 均등하게 教育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p> <p>②모든 國民은 그 보호하는 子</p>	<p>○無嫌疑 刑事被疑者 國家補償 追加</p> <p>○削 除</p> <p>○유아교육의 義務化와 無償 規定 新設</p> <p>○教育財政 保障 規定 新設</p>	

現 行	意 見	備考
<p>女에게 적어도 初等教育과 法律이 정하는 教育을 받게 할 義務를 진다.</p> <p>③義務教育은 無償으로 한다.</p> <p>第 30 條 ①모든 國民은 勤勞의 權利를 가진다. 國家는 社會的 · 經濟的 方法으로 勤勞者의 雇傭의 增進과 適正賃金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p> <p>第 31 條 ①勤勞者는 勤勞條件의 향상을 위하여 自主的인 團結權 · 團體交涉權 및 團體行動權을 가진다. 다만, 團體行動權의 行使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③國家 · 地方自治團體 · 國公營企業體 · 防衛産業體 · 公益事業體 또는 國民經濟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事業體에 종사하는 勤勞者의 團體行動權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p>	<p>○女性勤勞者의 雇傭上 均等條項 新設</p> <p>○最低 賃金制 規定</p> <p>○ 第 31 條第 1 項중 法律留保 削除</p> <p>○ 第 31 條第 3 項 削除</p> <p>○「 또는 國民經濟에 重大한 影響을 미치는 事業體」 削除</p>	

現 行	意 見	備考
<p>할 수 있다.</p> <p>第 32 條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p> <p>② 국가는 社會保障·社會福祉의 增進에 노력할 義務를 진다.</p> <p>③ 生活能力이 없는 국민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의 보호를 받는다.</p> <p>第 35 條</p> <p>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國家安全保障·秩序維持 또는 公共福利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限하여 法律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本質的인 內容을 侵害할 수 없다.</p> <p>其 他</p>	<p>○ 豫算의 確實한 配定과 均衡있는 社會保障의 擴充</p> <p>○ 老人福祉와 醫療保健에 關한 明文化</p> <p>○ 生活無能力者의 國家에 대한 保護請求權 新設</p> <p>○ 「必要한 경우」를 「不可避한 境遇」로 改正</p> <p>○ 「必要한 경우」를 「不可避한 境遇에 한하여 必要한 最少 範圍內에서」로 改正</p> <p>○ 適法節次 規定 新設</p> <p>“適法節次에 의하지 않으면 生命·自由 또는 財產을 剝脫</p>	

現 行	意 見	備 考
	<p>당하지 아니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抵抗權 條項 新設 ○ 死刑制度 廢止 또는 적어도 政治犯에 대한 死刑制度 廢止. 	

3. 司法制度分野

現 行	意 見	備考
<p>第 103 條</p> <p>③大法院에 大法院判事を 둔다. 다만,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大法院 判事が 아닌 法官을 둘 수 있다.</p> <p>第 105 條 ①大法院長은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任命한다.</p> <p>②大法院判事は 大法院長의 提請에 의하여 大統領이 任命한다.</p> <p>③大法院長과 大法院判事が 아닌 法官은 大法院長이 任命한다.</p> <p>第 108 條 ①法律이 憲法에 違反되는 與否가 裁判의 前提가 된 경우에 法院은 法律이 憲法에 違反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憲法委員會에 提請하여 그 決定에 의하여 裁判한다.</p>	<p>○大法院의 一元化로 大法院判事로만 大法院構成(第 130 條第 3 項 但書 削除)</p> <p>○大法院長은 法官推薦會議의 提請으로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任命</p> <p>또는 大法院判事の 互選으로 選出</p> <p>○大法院判事は 法官推薦會議를 거쳐 또는 大法院長 單獨으로 任命</p> <p>○一般法官은 大法院判事會議를 거쳐 또는 大法院長 單獨으로 任命</p> <p>○憲法委員會 廢止, 違憲法律 審査權은 大法院에 부여</p>	

現 行	意 見	備考
<p>第 109 條 大法院은 法律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範圍 안에서 訴訟에 관한 節次, 法院의 內部規律과 事務處理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p> <p>第 110 條 裁判의 審理와 判決은 公開한다. 다만, 審理는 國家의 安全保障 또는 安寧秩序를 방해하거나 善良한 風俗을 害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法院의 決定으로 公開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第 6 章 憲法委員會</p>	<p>○大法院에 自體豫算編成權 부여</p> <p>○基本權에 關聯된 裁判은 公開原則</p> <p>○廢 止</p>	

4. 政府形態分野

가. 議院內閣制

○ 意 義

議院內閣制는 議會의 「政治的 主權」과 「法の 支配」의 原則을 2大支柱로 하여 運營되는 制度로서 國民主權의 原則이 議會를 通하여 實現되는, 現代 代議民主主義 原則에 當然한 論理的 妥當性을 갖추고 있음.

○ 前提條件

- | | |
|-----------------|------------------|
| ① 成熟된 政黨制度 | ② 職業公務員制의 確立 |
| ③ 相當한 政治文化의 形成 | ④ 對話와 妥協의 雰圍氣 成熟 |
| ⑤ 通常的인 安保狀況의 持續 | ⑥ 住民自治의 確立 |
| ⑦ 國民의 求心點 存在 | ⑧ 社會機能의 分化 |

○ 長 點

- ① 國民이 熱望하는 民主化와 獨裁防止, 1人 長期執權 沮止에 適합한 制度임.
- ② 國民福祉를 지향하는 政治發展段階에서의 國民과 政府의 調和・一致를 가져옴.
- ③ 産業社會에서의 國民의 政治・社會的 參與慾求 增大에 副應하기 쉬움.
- ④ 政治의 責任不在 現象을 극복하므로써 權力의 集中과 獨占이 防止되고 權力의 人格化, 權力의 制度化로 인한 獨裁를 防止함.

- ⑤ 現代 大衆民主主義의 特徵인 廣範한 關聯 集團間의 對話, 妥協, 協商에 보다 效率的이고, 急進勢力等 社會 各勢力의 政治圈 吸收가 용이함.
- ⑥ 社會的 價値의 合法的 分配를, 政黨政治의 活性化를 通해 國民의 輿論을 收斂하여 實踐하기가 쉬움.
- ⑦ 民主主義의 根源인 民主代表性을 보다 손쉽게 確保함.
- ⑧ 政治指導者의 個人的 指導力, 政治制度, 政治이데올로기 3者의 均衡이 제대로 이루어짐.
- ⑨ 運營過程의 公開性·集團性으로 인해 恣意的이거나 獨斷的인 政策決定을 할수 없어 「法の 支配」 原則이 實現됨.
- ⑩ 急造 新進氣銳人士나 志操없는 政商輩를 排除하고, 民意를 意識하고 經綸있는 議會政治人이 아니면 首相이 될수 없음.
- ⑪ 政治參與의 質이 높아지고, 極限的인 對立은 與野 모두에게 不利하므로 與黨은 野黨을 無視하고 獨走할 수 없으며 野黨 또한 無責任한 反對를 할수 없게 됨.
- ⑫ 野黨이 直接的으로 國政運營에 參與하므로써 受權能力을 培養할 機會를 갖게 되어 國民의 判斷에 따른 政權交替가 可能해짐.
- ⑬ 政黨의 存在를 前提로 함으로 輿論收斂의 窓口로서 政黨이 活性化되고 育成되며 職業公務員制의 定着이 可能해짐.
- ⑭ 統一韓國의 憲法은 議院內閣制 憲法일 것이므로 우리 國民과 政治人이 이 制度에 익숙하는 것이 必要함.
- ⑮ 執權黨과 閣僚뿐 아니라 이를 代替할 수 있는 豫備執權黨과 豫備閣僚까지 國民이 直接 選擇하게 됨.

- ⑯ 大統領選舉時 敗北者에 대한 主權은 흔적이 없게 되나 議院內閣制에서는 모든이의 主權이 國會에서 行使하게 됨.
- ⑰ 選舉費用, 國力消耗, 行政空白을 最少化 함.
- ⑱ 政府가 失政하는 境遇 不信任決議를 통해 즉각 民意를 反映할 수 있어 갈등의 長期化를 막을 수 있음.

○ 短 點

- ① 頻繁한 內閣交替나 國會解散으로 國家의 危機 招來
- ② 多黨制下에서는 國會議員 選出만으로는 政權의 向方이 決定되지 않음.
- ③ 少數黨의 亂立時 離合集散으로 政府는 長期的이고 一貫性 있는 政策遂行이 어려움.
- ④ 選舉區民 또는 財閥等 壓力團體의 影響으로 과단성 있는 政策遂行이 어려움.
- ⑤ 分斷國家라는 現實과 關聯, 國家安保에 問題點 招來

一 國軍統帥와 安保關聯 情報管理

○ 補 完 策

- ① 執權黨의 弱화 또는 多數議席 未確保로 인한 政局不安도 뉴질랜드식의, 比例代表制의 割當率 調整으로 過半數 保障制度 採擇
- ② 잦은 國會解散 및 內閣不信任과 그로 인한 政治空白을 막기 위해 西獨식의 建設的 不信任制 採擇 또는 一定期間 國會解散 및 內閣不信任을 못하도록 裝置

- ③ 群小政黨의 出現을 막을 수 있는 選舉制 採擇
- ④ 國會議員의 부패방지를 위해 言論의 指導的 機能 擴充
- ⑤ 國家 危機時 大統領과 같은 權限을 首相에 부여
- ⑥ 適正한 小選舉區制 採擇과 西獨의 돈트식 比例代表制 採擇
- ⑦ 國民의 自治的 良識 涵養

○ 成功與件

- ① 與野間의 활발한 對話와 對國民 論議
- ② 第 2 共和國時節보다 10 倍나 增加한, 民主教育을 받은 高等教育 履修者 等으로 國民意識 向上과 國民의 政治的 熟練도가 높음.
- ③ 經濟成長과 中產層의 擴大
- ④ 주변의 平和에 대한 重要性 要求
- ⑤ 公共福利 增進을 위한 合理的 思考와 政治的 指導勢力 增加

나. 大統領中心制

○ 意 義

大統領制는 行政機能의 遂行能力을 極大化하는 政府形態로서 三權分立原理를 基礎로 三權間에 견제와 均衡을 維持하려는 政治制度이나 創案國인 美國以外의 나라에서는 政治風土와 諸般與件이 달라 國民의 自由를 保障하기 위한 三權分立이란 制度的 裝置는 退化하고 權力集中現象으로 獨裁와 長期執權의 手段으로 誤用되고 있는 現實임.

○ 前提條件

- ① 嚴格한 三權分立
- ② 美國의 聯邦制와 같은 權力分散
- ③ 國會地位 格上과 活性化
- ④ 司法府의 獨立과 優位
- ⑤ 壓力團體의 活性化
- ⑥ 健全한 政治文化의 傳統
- ⑦ 公正한 言論保障과 國民意識의 提高

○ 長 點

- ① 任期中 所信에 의한 政策執行
- ② 國家安保와 關聯, 強力한 國軍統帥權 行使
- ③ 社會諸問題를 신속 적절히 解決하고 社會不安要因에 대한 強力한 統制力 發揮로 政治安定 圖謀
- ④ 東洋社會의 家父長的 權威主義와 어울리고 우리 國民에게 36年 間 익숙해진 制度임.
- ⑤ 先進國은 대개 議院內閣制를 採擇하나 우리와 같은 開發途上國은 대개 大統領制 採擇
- ⑥ 直選制의 境遇, 國民의 손으로 國政最高指導者를 뽑는다는 直接民主的 正當性 또는 正統性을 確保

○ 短 點

- ① 權威와 權力을 1人이 獨占하므로써 君臨하는 帝王 탄생
- ② 傳統的 權威主義와 結合하여 權力의 人格化 招來
- ③ 國會의 多數黨 指導者와 大統領이 一致되면 三權分立에 의한 牽制機能 喪失
- ④ 한 사람의 判斷에 國運을 맡겨야 하는 危險負擔
- ⑤ 政治的 責任回避現象 招來
- ⑥ 大統領의 強力한 吸引力으로 政黨政治가 發達할 수 없음
- ⑦ 少數엘리트에 의한 忠誠政治로 長期執權의 可能性 增大
- ⑧ 直選制의 경우 地域感情의 暴發, 遊說場의 暴力等으로 準內亂化, 選舉費用의 過多支出, 選舉結果에 대한 不承服으로 混亂惹起

○ 補 完 策

- ① 國會解散權, 非常措置權等の 大統領權限 縮小
- ② 國會에 國政監査權 賦與, 彈劾訴追權을 彈劾決定權으로 強化하고 彈劾要件 緩化, 國會의 同意를 要하는 高級公務員의 範圍 擴大
- ③ 地域感情解消와 政治後繼者 養成을 위해 副統領制 新設
- ④ 選舉費用節約과 混亂防止를 위해 遊說制限과 T. V等 言論媒體 利用 政見發表
- ⑤ 反權威的 民主意識 涵養

다. 折衷型 政府形態

○ 意 義

折衷型은 大統領制의 長點인 能率과 安定, 議院內閣制의 長點인 責任政治와 權力分散을 함께 具現할 수 있는 制度로서 그 나라의 政治現實과 歷史, 文化的 背景에 따라 多樣한 形態를 取하고 있음.

○ 前提條件

- 大統領의 選舉方式은 國民統合을 위해 直選制이어야 함.
- 大統領을 中心으로 하여 運營되는 體制는 자칫 權威主義化 할 危險이 있으므로 大統領의 權限을 現行 憲法上의 것보다는 縮小할 必要있음. 國務會議의 지위를 格上하여 議決機關으로 하고 國家緊急權의 發動要件을 엄격히 해야 하며 國會解散權은 削除.
- 大統領을 牽制하기 위해서 國會의 機能을 強化, 國會의 構成부터 合理的으로 이루어져야 함. 즉 投票價置의 平等이 保障될 수 있도록 選舉區를 再劃定해야 하고 現行 中選舉區制를 小選舉區制로 해야 하며, 國民의 政治意思가 國會에 잘 反映되도록 現行 全國區制度를 改善해야 함. 그리고 國會의 國政調查權 또한 實效적인 것이 되도록 그 發議 및 議決定足數를 緩和해야 함.
- 法院의 權限과 機能을 強化하므로써 大統領을 牽制해야 함. 大法院長은 法官推薦會議의 提請으로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任命하고 法院에 대한 豫算編成權을 法院自身이 갖게 함으로써 司法權이 實質적으로 保障되도록 하여야 함.

議院內閣制에 大統領制의 要素가 加味된 政府形態

○ 特 徵

- ① 政權交替가 용이한 議院內閣制에 國家安定을 담보하기 위하여 大統領制 加味가 必要함.
- ② 大統領은 國家를 代表하고 國防·外交에 關한 權限을 行使하도록 하며 國務總理에게는 여타의 政治的·行政的 實權을 줌.
- ③ 危機狀況에는 大統領制와 같은 權限이 補強되고 國會와 內閣의 極限對立의 調整을 위해 國會解散權을 가짐.
- ④ 內閣은 國會議員으로 構成되고 議會에 대한 解散權을 갖지않음.
- ⑤ 內閣不信任權과 國政監査權을 國會에 둠.

○ 長 點

平和時 議院內閣制의 長點을, 危機時 大統領中心制의 長點을 갖추며 特히 政權競爭에서 초연한 國家元首의 政治的 仲裁로 社會的 긴장해결이 容易하고 暴動, 革命과 같은 事態가 豫防됨.

○ 短 點

- ① 兩制度의 短點이 모두 折衷型的 短點이 될 수 있으며
- ② 內閣과 大統領의 不和時 調整이 어렵고
- ③ 大統領의 緊急權 發動時 議院內閣制的 要素가 有名無實해짐.

大統領制에 議院內閣制的 요소가 강하게 가미된 政府形態

○ 特 徵

- ① 大統領은 直選되거나 國會가 아닌 選舉人團에 의해 選出됨.
- ② 國務總理은 國會의 同意나 承認을 얻어 大統領이 任命함.
- ③ 行政權이 大統領과 內閣에 거의 비슷하게 分散되어 있음.
- ④ 國會는 內閣不信任權을, 大統領은 國會解散權을 갖고 있음.
- ⑤ 國務總理와 國務委員은 國會議員을 兼職할 수 없고 大統領이 非常措置權을 갖음.

○ 長 點

- ① 大統領이나 國務總理의 有故時에 國政의 混亂을 막을 수 있음.
- ② 大統領의 獨裁를 國務總理가 견제할 수 있음.
- ③ 內閣의 存立이 國會에 의존해 있으므로 國政이 민의에 따라 運營된다 할 수 있음.
- ④ 國會에 勢力變動이 있더라도 大統領은 比較的 초연하게 國政을 運營할 수 있음.
- ⑤ 國會가 內閣을 不信任할 수 있기 때문에 責任政治를 具現할 수 있음.
- ⑥ 政黨政治가 形成되어 가고 있는 段階의 國家에서는 政黨政治의 實現기틀을 서서히 確立해 나갈 수 있음.

○ 短 點

- ① 大統領과 國務總理間에 對立이 있을 경우 자칫 國政이 마비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② 大統領과 國務總理가 行政權을 水平的으로 分配하고 있으면 責任 行政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 ③ 大統領과 總理間의 權限分配를 행정의 統合性을 維持하면서 技術的으로 兩分하기가 어렵고 이것이 잘못되었을 때 不作用이 생김.
- ④ 國會解散權 行使를 國會와 內閣의 對立調整을 위해 행사하지 않고 政治的 目的에 利用한다면 兩制度의 短點만 나타나는 결과가 됨.
- ⑤ 大統領이 非常措置權을 남용하여 行政權을 장악하게 되면 制度的 意義가 상실됨.
- ⑥ 우리에게서 생소한 制度임.
- ⑦ 運營過程에서 大統領과 國務總理間에 乖離이 形成되어 마찰을 일으킬 경우엔 國政이 能率的으로 運營될 수 없음.

大統領制에 議院內閣制的 要素가 다소 加味된 政府形態

○ 特 徵

- ① 大統領은 直選되며 副統領을 두지 않고 國務總理를 두고 있음.
- ② 國會의 同意없이 國務總理를 任命하는 것이 一般的임.
- ③ 內閣이 상당한 行政權을 갖고 있으나 大統領이 直接 指揮監督하며 이때의 大統領, 國務總理, 國務委員의 地位關係는 垂直的이라 할 수 있으나 內閣도 일정한 範圍內에서 國會에 대하여 責任을 짐.
- ④ 國會는 內閣不信任權이 없고 個別的으로 不信任할 수 있음.
- ⑤ 國務總理 및 閣僚는 國會委員을 兼職하지 않음.

⑥ 大統領에게 國會解散權, 特定案件에 대한 國民投票 附議權을 주는 경우도 있음.

○ 長 點

① 國家的 危機 狀況에서 大統領이 強力한 領導力을 發揮하므로써 政局을 克服해 나갈 수 있음.

② 순수한 大統領制에 비해서 內閣이 어느정도 國政에 關與할 수 있으므로 大統領의 獨走를 견제할 수 있음.

③ 그 밖에 순수한 大統領制의 長點이 모두 이 制度의 長點이 될 수 있음.

○ 短 點

순수한 大統領制의 短點이 이 制度에서도 거의 短點으로 나타남.

大統領制를 中心으로 한 두 制度에 대한 短點의 補完策

— 大統領과 國務總理가 政黨的 次元에서 對立하여 國政이 癱痺되는 事態로 發展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① 大統領을 大統領의 當選과 함께 黨籍에서 離脫케 하고, 單任制로 하여 大統領으로 하여금 實質적으로 所屬政黨과의 關係를 斷切케 할 必要가 있으며

② 國務總理 任命에는 國會의 同意를 要하지만 解任은 單獨으로 할 수 있게 하여 政黨으로부터의 獨立을 保障할 수 있게 하는 方法도 있음.

— 大統領과 國務總理間에 派閥的 磨擦이나 行政權이 어느 한쪽에 偏重될 것에 對備하여 權限과 機能의 分配를 垂直的으로만 하지 않고 水 平的인 方法을 竝行하도록 함.

- 國會解散權 行使의 發動要件을 嚴格히 하여 그 濫用을 막음.
- 行政權의 二元化로 大統領이 無力化되지 않도록 모든 側面에서 大統領이 指導的 位置에서 國政을 監督·指揮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國家緊急權을 濫用하여 總理權限에 關與하는 일이 없도록 緊急權 發動要件을 嚴格히 하고 國會등에 의한 事後統制手段을 憲法上 講究해 두는 것이 바람직 함.

5. 財政·經濟分野

現 行	意 見	備考
<p>第 8 章 地方自治</p> <p>第 9 章 經 濟</p> <p>第 120 條 ①大韓民國의 經濟秩序는 個人의 經濟上의 自由와 創意를 尊重함을 基本으로 한다.</p> <p>②國家는 모든 國民에게 生活의 基本的 需要를 충족시키는 社會 正義의 실현과 균형있는 國民經濟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範圍 안에서 經濟에 관한 規制와 調整을 한다.</p> <p>③獨寡占의 폐단은 적절히 規制·調整한다.</p> <p>第 121 條</p> <p>②國土와 資源은 國家의 보호를 받으며, 國家는 그 균형있는 開</p>	<p>○ 地方財政確保 條項 新設</p> <p>○ 經濟力 集中을 緩和하기 위한 規定 補完</p> <p>○ 第 3 項은 2 項에 吸收</p> <p>○ 「獨寡占의 폐단」을 「獨寡占과 經濟力集中의 폐단」으로 改正</p> <p>○ 獨寡占 規制란 表現은 「市場競爭力 提高」로 改正</p> <p>○ 第 3 項은 「企業의 市場集中力은 自律的으로 規制되어야 하며 그 所有와 經營의 分離 및 企業利潤은 勞使間에 均점되도록 勞力하여야 한다」로 改正</p> <p>○ 第 123 條와 統合</p>	

現 行	意 見 備考
<p>發과 利用을 위하여 필요한 計劃을 樹立한다.</p> <p>第 122 條 農地의 小作制度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지된다. 다만, 農業生産性의 提高와 農地의 合理的인 利用을 위한 賃貸借 및 委託經營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p> <p>第 123 條 國家는 農地와 山地 기타 國土의 效率的이고 均衡있는 利用·開發과 保全을 위하여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義務를 課할 수 있다.</p> <p>第 124 條</p> <p>② 國家는 中小企業의 事業活動을 保護·育成하여야 한다.</p>	<p>○ 農業生産性 提高만 고려했는데 農民保護 側面을 補完</p> <p>○ 獨立條文化</p> <p>○ 獨寡占과 關聯, 積極的으로 規定할 必要있음.</p> <p>○ 「國家는 健全한 中小企業의 基盤위에 大企業이 成長되도록 하여야 한다」로 改正</p>

現 行	意 見	備考
<p>③ 國家는 農民·漁民과 中小企 業의 自助組織을 育成하여야 하 며, 그 政治的 中立性을 保障 한다.</p> <p>其 他</p>	<p>○ 經濟條項과 어울리지 않으므로 다른 곳에 配置</p> <p>○ 人口關聯條項 新設</p>	